



김재호
본회 전문위원

개정상법의 주요내용 해설

I 개 요

지난 2008년 10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상법일부 개정법률안 중 일부를 발췌하여 법률사법법제위원회 안으로 성안하여 동 법률안이 지난 2009년 1월 8일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30일 공포되었다(법률 제9362호).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 중 금번 개정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은 추후 다시 논의를 거쳐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시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번 개정상법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의 명칭도 **‘상법시행령’**으로 변경하였다(2009.2.3. 공포).

이하에서는 금번에 개정된 상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당초 정부안 중에서 채택된 것과 미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제안경위

- 2008. 10. 21. 정부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 2008. 11. 27. 제278회 정기국회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 2008. 11. 28. 제278회 정기국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중 일부를 발췌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안으로 성안
- 2009. 1. 6. 제279회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
- 2009. 1. 6. 제279회 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성안하여 보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
- 2009. 1. 8. 제279회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안이 본회의 통과
- 2009. 1. 30. 개정상법 공포(법률 제9362호)
- 2009. 2. 3. 상법시행령 공포(2009.2.4. 시행)

2. 제안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한다)(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될 예정인 증권거래법의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을 상법의 회사편에 포함시켜 법적용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회사법제의 완결성을 추구하기 위함.

II 주요내용

금번 개정상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상법의 회사편으로 이관한 것이다. 즉 종전 증권거래법에 있던 내용 중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사항의 일부가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이관되었는데¹⁾ 동 법률이 2009. 2. 4. 시행되고 증권거래법이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시기에 맞춰 폐지됨에 따라 이 중에서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옮겨가지 아니한 상장회사 특례에 관한 사항을 상법에서 수용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편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 세분하여 구분·등기

- 종래에는 '이사'와 '감사'로 구분하여 등기하던 것을 개정상법에서는 이사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구분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기하도록 하였다(상법 §317 ② 8).

(2) 주주제안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주제안을 할 경우 이사에 대하여 회일의 6주간 전에 서면으로 주주제안을 할 의안의 요령을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게 하였다(상법 §363조의 2 ①).
-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

반하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제안이 있더라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상법 §363의2 ②).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종전 증권거래법에서는 i)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ii)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iii)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 iv)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에 대하여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개정상법에서는 iv)의 내용을 보완하여 **부결된 의안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못 얻어 부결된 경우에만** 동일한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상법 §363조의2 ③, 상법시행령 §5).

(3)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 명시 및 사외이사에 관한 정의 도입

- 개정 전 상법은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만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상법 §382 ②).
- 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던 '사외이사'에 관한 정의를 상법에서 명시하였다(상법 §382 ③).

(4)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재결의 금지 등

-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393조의2 제3항의 규정(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에 불구

1) 구 증권거래법에서 상장법인 등에 대한 재무특례사항 중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이관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즉 자기주식의 특례(§165의 2), 이익소각의 특례(§165의 3), 합병 등의 특례(§165의 4),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165의 5), 일반공모증자(§165의 6),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165의 7), 액면미달발행의 특례(§165의 8), 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165의 9), 사채발행의 특례(§165의 10), 신중사채의 발행(§165의 11), 이익배당의 특례(§165의 12), 주식배당의 특례(§165의 13), 공공적 법인의 배당등의 특례(§165의 14), 의결권없는 주식의 특례(§165의 15),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165의 1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165의 17),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165의 18) 등이다.

하고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상법
§415조의 2 ②).

- 종전에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가 다시 결의할 수 있어 논란이 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이를 다시 결의할 수 없도록 명문규정을 두었다(상법 §415조의2 ⑥).

2.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1) 상장회사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우선적용

- 상장회사의 특례에 관한 사항(제13절)은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상법 §542조의2 ②).
-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증권시장'에 관한 근거로 자본시장통합법 제9조 제13항에서 정하는 시장임을 명시하였다(상법 시행령 §8 ①).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등 특정

-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회사 외에 '관계회사'의 이사 등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여범위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확대하고(상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는 이 한도를 100분의 15로 정하고 있음),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한도에 따라 자본금 규모별로 차등적용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542조의 3, 상법시행령 §9 ④).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관계회사의 범위를 해당 상장회사가 총출자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외국인인 등 관계회사로 규정하고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 대하여도 주식매수선택

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시행령 §9 ①).

- **행사가액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두지 않음**에 따라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산정방식을 따르도록 하였다(상법 §4542조의2 ②).

(3)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방법 등

-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100분의 1 이하의 소액 주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정관에서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으로도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542의4 ①, 상법시행령 §10 ②).
- 주주총회 개최시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만 이사 후보자의 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소집통지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던 것을 개정상법에서는 감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도 **감사후보자의 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소집통지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였다**(상법 §542의4 ②).
-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상법 §542의4 ②에 따라 **미리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다**(상법 §542의5).
-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사업개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 참고서류** 등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던 것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1) 회사의 본점 및 지점, 2) 명의개서대행회사, 3) 금융위원회, 4)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542의4 ③, 상법시행령 §10 ④).

(4)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 소수주주권 중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및 회사의 업

- 무·재산상태조사권이 최근사업연도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3%, 1천억원 미만은 1.5%의 지분을 요구하였으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조사권의 지분요건을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1.5% 기준으로 단일화하였다(상법 §542의6 ②~⑥, 상법시행령 §11).
-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에 대하여는 산정대상기준이 되는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가 아닌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변경하였다(상법 §542의6).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비교

소수주주권	상법 (%)	증권거래법				개정 상법 (상장회사)		
		1천억 미만	1천억 이상	6개월 요건	산정 대상 주식	행사 요건	6개월 요건	산정 대상 주식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3	3	1.5	○	의결	1.5	○	발행
업무·재산상태 조사권	3	3	1.5	○	발행	1.5	○	발행

※ 산정대상주식에서 '의결'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를 '발행'은 발행주식총수를 의미함.

(5) 집중투표 배제시 정관변경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

- 주식회사는 집중투표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 개최일의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나(상법 §382의2 ②) 상장법인에 한하여 주주총회일(정기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6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도록 하였다(상법 §542의7 ①).
-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목적

사항으로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변경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타의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상법 §542의7 ④, 상법시행령 §12).

(6)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완화

- 사외이사 결격요건 중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상법 §542조의8 ② 8), 이 경우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중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i)배우자, ii)6촌 이내의 혈족, iii)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였다(상법시행령 §13 ④).

(7)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범위 상향

- 개정상법은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감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어음을 배서하는 거래,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등을 제한하였다(상법 §542의9 ①).
- 다만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 신용공여가 종전 증권거래법에서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왔으나, 개정상법에서는 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내에서 **금전을 대여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되었다(상법 §542의9 ②, 상법시행령 §14 ②).

(8) 상근감사의 의무적 설치

- 최근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1명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상법 §542의10 및 §542의 11, 상법시행령 §15, §16).

-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법인이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에 강제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상법 §415의2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542의10 ①).
- 상근감사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구 증권거래법은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또는 2년 이내의 임직원은 상근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상근감사의 연임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있었으나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로 규정하여 감사를 제외함으로써 상근감사의 연임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였다(상법 §542의10 ②).

(9)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해임권이 주주총회에 있음을 명시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해임권이 이사회에 있는지, 아니면 주주총회에 있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었으나 개정법은 주주총회에 그 권한이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상법 §542의12 ①).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방식을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먼저 선임하고, 감사위원은 이사로 선임된 자 중에서 선출하는 일괄선출방식으로 통일하였다(상법 §542의12 ②).
- 종래에는 감사위원회 설치 후 중간에 감사위원의 사임 등으로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구성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유발생 후 최초의 주주총회에서 결원을 충원하면 되었다. 다만, 감사위원회 최소 구성원수인 3명을 결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바로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감사위원회 최소 구성원수를 결하더라도 사유 발생 후 최초의 주주총회에서 결원을 충원하면 되는 것으로 명문규정을 두었다(상법 §542의11 ④).

(10) 벌칙의 강화

- 과태료의 경우 상법상 징수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징수하도록 명문규정을 두었다(상법 §637의2).
- 아울러 구 증권거래법에 있던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새로이 규정하였다(상법 §624의2, §635).

개정상법과 구 증권거래법상의 벌칙규정 비교

구 분	구 증권거래법	개정 상법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사외이사 선임의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사위원회 설치 등 의무위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사회 승인 없이 주요주주등과 일정규모 이상 거래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영참고사항 등 총회의 소집통지·공고의 위반 집중투표, 정관인건, 분리상정 및 이사·감사 선임과 보수 인건을 분리 상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타 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도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였다(상법 §634의3).

III 개정안 중 미반영된 사항

1. 정부가 제출한 상법개정(안)의 반영 여부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상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2008. 10. 21자) 중에는 금번 개정에서 반영된 상장회사 특례(개정상법 제13절) 등 이외에도 무액면주식의 도입,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 도입,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이사의 책임경감, 집행임원제도, 배당제도의 개선, 사채발행한도의 폐지 등 다양한 내용들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사항들은 금번 상법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이러한 사항들은 추후 재논의를 거쳐 입법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금번 상법개정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입법에 미반영 사항

(1)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

- 공동기업형태, 합자조합, 사모펀드와 같은 펀드나 기업 등 새로운 형태의 기업 도입에 관한 사항

(2) 무액면주식제도 등

-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종류의 주식도입

-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양도·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등에 관한 사항

(4)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도

- 유가증권의 무권화를 위하여 주권과 사채를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한 후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도 권리의 양도, 담보의 설정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등록제도에 관한 사항

(5)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 가족기업처럼 소규모로 운영되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1주 전으로 단축하고 주

주 전원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도 허용하는 사항

(6)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 주주가 주총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자기거래승인대상의 확대

- 이사와 회사간 자기거래의 요건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사항

(8)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 이사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제3자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9) 이사의 책임경감

-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10) 집행임원제도

-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에 관한 사항

(11) 소규모회사의 감사 선임의무 면제

-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감사선임을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하도록 하는 사항

(12) 상법상 회계관련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

- 상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괴리현상의 개선에 관한 사항

(13)법정준비금제도 개선

-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준비금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배당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자는 내용

(14)배당제도 개선

- 현행 주주총회의 결의로 배당액을 결정하는 것을 정관에서 배당에 관한 결정기관을 이사회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배당 이외에 현물배당도 허용하자는 내용

(15)사채제도의 개선

- 사채의 발행총액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이익배당부사채의 발행 등의 발행근거를 명시하자는 내용

IV 실무상 유의사항

1. 이사 등 선임 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등기함에 유의

개정상법이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일(2009. 2. 4)에 맞춰 시행되므로 금번에 개척되는 12월 결산 회사가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할 경우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 비상무이사) 등으로 구분하여 등기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상법 317 ② 8).

2. 주주제안의 거부사유의 요건 이해 필요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주주제안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사항 이외에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에 대하여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의안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못 얻어 부결된 경우에만 동일한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

에 다시 제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상법 §363조의2 ③, 상법시행령 §5).

3. 이사·감사 선임시 미리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절차 이해

상장회사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등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이러한 내용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며(상법 §542의4 ②), 이렇게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여야 함으로(상법 §542의5) 통지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후보를 주총에서 선임할 수 없음을 실무상 유의하여야 한다.

4.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회사가 집중투표 배제의안 상정시 다른 정관변경의안과 별도로 상정해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변경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타의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상법 §542의7 ④). 그러나 자산규모 2조원 미만 회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 감사위원 선임시 분리선출방식 불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해임권이 이사회에 있는지, 아니면 주주총회에 있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었으나 개정법은 주주총회에 그 권한이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므로(상법 §542의12 ①) 사내이사과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소위 분리선출방식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6. 강화된 벌칙내용의 이해

구 증권거래법에서는 과태료를 금융위원장이 부과할 수 있었으며 상법상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를 징수기관이 명정되지 않았으나 개정상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징수하도록 하였고 벌칙도 강화되었으므로 실무상 특히 유의하

여야 한다.

아울러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토막의 어유



오바마 정책 키워드, '그린 MBA' 와 'PM'

경제·산업정책은 그린(MBA)
중산층 Middle class
큰정부 Big Government
경기부양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

통상정책은 PM)
보호무역 Protective trade
다자주의 Multilateral

코트라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키워드를 그린(Green) MBA로, 통상정책 키워드를 PM으로 제시했다. 1월 20일 코트라는 내놓은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는 오바마 정부의 미국 시장 공략법으로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챙기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IT장비의 미국 수출이 유망하다고 분석했다. '그린'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강조하는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상징한다. M은 세계개편과 함께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4500만명에 이르는 보건의료 부문 개혁을 통해 중산층(Middle class)을 강화하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B는 부시 행정부 기간 최고조에 달했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대신 규제 강화와 시장 개입을 표방하는 큰 정부(Big Government)를, A는 오바마 정부의 최대 과제로 4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노린 경기부양(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을 의미한다. 대외 통상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PM'의 P는 공정무역을 명분으로 내세운 보호무역(Protective trade)을, M은 대외 통상에서 자유무역 협정(FTA)으로 상징되는 양자주의 대신 다자주의 교역체제(Multilateral trade)를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트라는 오바마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기대감을 표시한 반면, 미국 내 일자리 확보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타깃은 중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오바마 당선인이 상원의원 시절 보조금 지급 및 환율 조작 판정 시, 상계관세를 부과토록 하는 'Fair Currency Act of 2007'을 도입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오종혁 KOTRA 구미팀장은 "보호무역의 주요 타깃은 중국이었지만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위기 속에서도 IT산업과 같은 기회요인을 적극 발굴,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09년 1월 20일자 코리아헤럴드에 게재된 기사내용이다.